

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9. 21.(수) 09:1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- 제4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 확인

- 제50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, 제52차 서면회의 결과 <보고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⑦ 의결사항

가. 「방송법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53-197)

-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대한 승인근거 마련 및 채널 편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정하는 「방송법」 일부개정안을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다채널 방송에 대한 '부가채널'의 정의 및 승인근거 등 신설, 부가채널 편성에 대한 특례 신설,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하는 「방송법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53-198)

-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이익 침해 및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,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3월 31일 위원회 보고 이후, '비필수 소프트웨어 삭제 제한 금지'(개정안 별표4 5호 사. 3)) 관련 '부당한' 행위만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
 - '부당한 서비스 접근제한 금지'(개정안 별표4 5호 사. 4)) 관련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(고시)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견을 반영하고
 - '부당한 정보 오인광고 금지'(개정안 별표4 5호 사. 5)) 관련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등을 반영한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「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6-53-199)

-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통사·유통점에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·게시하도록 하기 위한 「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이통사의 공시 내용에 출고가·지원금·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이통사가 공시하는 표준서식(별지 제1호)과 대리점·판매점이 게시하는 표준서식(별지 제2호)을 수정하는 「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「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에 관한 건 (2016-53-200)

○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「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
- 8월 11일 위원회 보고이후, 행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외주제작사가 미디어렙사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와 방송광고 대행 수수료 지급 범위 등을 정하는 「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」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⑧ 보고사항
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및 EU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주요내용 ①, ③, ⑥의 ‘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’ 등 ‘개인정보보호법’이란 표현을 삭제하여 의결하고,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나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위치정보 보호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개정이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‘위치정보법의 규제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’를 ‘위치정보법의 규제’를 ‘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’로 표현을 수정하고 주요 개정내용 ④, ⑤, ⑨, ⑩의 ‘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’ 등 ‘개인정보보호법’이란 표현을 삭제하여 의결하고,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다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라. 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「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 중 (별표1)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(별표2)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개정하기 위한 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 일부개정안을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㉠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회의는 9월 29일(목)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15)